

## 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공모주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7.06.02
3. 주요 정정사항 : Class C-P2 클래스 신설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~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2. (생략) 13. <신설>	①~② (현행 유지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2. (현행 유지) 13. <u>Class C-P2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2. (생략) 13. <신설> ②~⑤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2. (현행 유지) 13. <u>Class C-P2 수익증권</u> ②~⑤ (현행 유지)
제39조(투자신탁보수)	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	①~② (현행 유지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	1.~12. (생략) 13. <신설>	1.~12. (현행 유지) 13. Class C-P2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8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 III. [1] 과세	-	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P2 가입자에 한함) 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 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-	C-P2 클래스 신설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-	C-P2 클래스 신설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. 종류형 구조	-	C-P2 클래스 추가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(1) (생략)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신설> (3)~(4) (생략)	(1) (현행 유지) (2) 종류별 가입자격 C-P2 클래스 추가 (3)~(4) (현행 유지)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신설>	- C-P2 클래스 추가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70 판매회사보수 : 0.80 신탁회사보수 : 0.0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0.015 총보수·비용 : 1.575 - 투자자 부담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 C-P2 클래스 추가
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&lt;신설&gt;</p>	<p>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P2 가입자에 한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 <p><b>&lt;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납입요건</u> :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li> <li>- <u>수령요건</u> :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li> <li>- <u>연금계좌 세액공제</u> 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li> <li>- <u>연금수령시 과세</u> : 연금소득세 5.5~3.3%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<u>분리과세한도</u> :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</li> <li>- <u>연금외 수령시 과세</u>: 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<u>해지가산세</u>: 없음</li> <li>- 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</u>: 천재지변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/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/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li> <li>- 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</u>: 연금소득세 5.5~3.3%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<u>연금계좌 승계</u>: 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</li> </ul> <p>주1) 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(이하 "납입증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

		<p>명서"라 합니다)를 발급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p>
--	--	--

**[간이투자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II. [1]투자전략 4.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III. [1] 과세	-	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P2 가입자에 한함) 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